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30
----------	-------

발의연월일 : 2026. 6. 18.

발 의 자 : 송석준 · 안철수 · 김예지  
고동진 · 이종배 · 광규택  
김성원 · 성일종 · 이헌승  
배준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보유·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또한 대체 취득, 상속, 혼인, 동거분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질병 치료, 교육, 직장·사업상의 사유,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임시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나아가 귀농·귀촌에 따른 주택 보유 역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예외의 인정 필요성이 제기됨. 그럼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사업상 사정,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95조제7항 신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중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를 “상속, 동거봉양, 혼인,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로 한다.

제9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① ~ ⑥ (생략)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